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병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364 발의연월일: 2021. 7. 6.

발 의 자:서병수・김기현・김예지

김태호 · 김태흠 · 류성걸

박수영 • 배준영 • 양금희

유경준・윤두현・윤주경

이 영 · 이주환 · 장혜영

전주혜 • 정동만 • 조수진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·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 여야 하는 의무위탁 대상 선거인 반면,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해당 기관이 그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 탁 대상 선거임.

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각 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시후보자들 간 경쟁이 과열됨에 따른 부작용 및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, 현행법은 선거사무 위탁관리 여부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 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선 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3제2항 및 제72 조제9항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35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3제2항 중 "군선거관리위원회"를 "군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이하에서 "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.

제72조제8항 중 "제27조의3"을 "제27조의3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중앙회는 제7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회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이 항에서 "중앙선거관리위원회"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임원의 선거관리 위탁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3제2항 및 제72
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의3(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	제27조의3(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
구성・운영 등) ① (생 략)	구성・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
	<u></u> 이
② 조합은 제27조제2항, 제3항	②
및 제9항에 따라 선출하는 임	
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	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	
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	
는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	
른 구·시· <u>군선거관리위원회</u>	
에 위탁할 수 있다. <단서 신	이 항에서 "구·시·군선거관리
<u>설></u>	위원회"라 한다)
	<u>다만, 같은 조 제2항 및 제</u>
	3항에 따른 이사장 선거의 관리
	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구・시・군선거관리
	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.
제72조(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)	제72조(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)
① ~ ⑦ (생 략)	①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	8
제27조의2, <u>제27조의3</u> , 제31조	<u>제27조의3제1항</u>
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.	
<u><신 설></u>	⑨ 중앙회는 제71조의2제1항

및 제3항에 따른 중앙회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선거관 리위원회법」에 따른 중앙선거 관리위원회(이하 이 항에서 "중앙선거관리위원회"라 한다) 에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중앙 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야 한다.